##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984

발의연월일: 2020. 12. 29.

발 의 자:유정주・박 정・조승래

이광재 • 양이원영 • 박홍근

이규민 • 도종환 • 맹성규

이병훈 · 서동용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프리랜서 비율이 높은 문화예술계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던 예술인 대상으로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도입하였음. 그러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한 예술인 대상 융자는 상환이 수반되는 등의 특성이 있는 바 회계관리 및 운영에 있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며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 상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를 명시하고, 해당 자금에 대하여 회계처리의 구분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인의 복지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18조제5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회계처리의 구분) 제18조제5호의2에 따른 융자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운용되는 자금과 각각 구분하여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7조의2(회계처리의 구분) 제18
	조제5호의2에 따른 융자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다른 사
	업목적으로 운용되는 자금과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5의2.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